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92
----------	-----

2025. 1. 21.(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현문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5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1월 21일

-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현문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는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K-유학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이에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할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대 등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외국인 유학생 관련 도지사의 책무와 조례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계획 수립, 지원 사업, 유치 확대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는 2024년부터 지방대학의 학생 부족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K-유학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충청북도는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동시에 제공하여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음
- 이에 충북도에 거주하면서 충북지역 내 대학을 진학하거나, 진학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과 충북지역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할 지원 등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지원의 입법·정책적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조항으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에서 정한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함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하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함
- **안 제4조**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등이 이 조례의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불법체류 유학생등과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임
- **안 제5조**는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시책, 실태조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평가 및 다음해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함
- **안 제6조**는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적응교육, 장학금 지원, 취업·창업 연계 및 상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 등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음
 - 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단체 및 대학,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한 것은 투명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7조**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등의 유치 확대를 위해 홍보 및 설명회, 유학컨설팅 및 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업내용이 적절함
- **안 제8조**는 제5조와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지원 및 수탁자 지도·감독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이 타당함

- 안 제9조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필요성) 이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 증가와 충청북도의 K-유학생 제도의 정착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타당성) 이 제정안은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급감의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음
- (법적합성) 상위 법령 위배 또는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한 사업내용 조정, 자구 수정 등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다만, 조례안 심사 시 입법자의 제정 취지, 집행기관의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2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안의 지원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정하고,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지원한다는 오해를 해소하고, 도지사의 책임감 있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명시하려는 것임

나. 수정 주요내용

- 제명을 '충청북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함
-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외국인유학생'의 정의를 재정의함
(수정안 제2조)
- 조례의 지원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에서 외국인유학생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지원 기준, 자격,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수정안 제4조)
- 지원계획에 외국인유학생 지원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함
(수정안 제5조)
-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축소(9개 사업 ⇨ 6개 사업)하고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수정함(수정안 제6조)
- 그 밖에 지원대상 축소에 따라 용어 및 자구 등을 수정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포함)」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792
----------	-------

발의연월일: 2025. 1. 21.(화)

발 의 자 : 김현문의원 등

1. 제안이유

- 조례안의 지원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정하고,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지원한다는 오해를 해소하고, 도지사의 책임감 있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수정안의 주요내용

- 제명을 ‘충청북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함
-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외국인유학생’의 정의를 재정의함
(수정안 제2조)
- 조례의 지원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에서 외국인유학생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지원 기준, 자격,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수정안 제4조)
- 지원계획에 외국인유학생 지원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함
(수정안 제5조)
-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축소(9개 사업 ⇨ 6개 사업)하고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수정함(수정안 제6조)
- 그 밖에 지원대상 축소에 따라 용어 및 자구 등을 수정함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충청북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생생활”로, “유치 확대”를 “유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의4에 따라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규학위를 받기 위하여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중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하 “외국인 유학생등”이라 한다)”을 “외국인유학생”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인 유학생등”을 “외국인유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자격,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외국인유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외국인 유학생등”을 “외국인유학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

지 중 “외국인 유학생등”을 각각 “외국인유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2. 외국인유학생 지원 시책, 지원 기준, 자격,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 유학생등”을 “외국인유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적응”을 “적응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 유학생”을 “우수 외국인유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7호) 중 “외국인 유학생등”을 “외국인유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9호) 중 “외국인 유학생등”을 “외국인유학생”으로 한다.

4.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

제6조제2항 중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거짓”을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거짓”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 유학생등”을 “외국인유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학생”을 “유학”으로 한다.

제9조 중 “외국인 유학생등”을 “외국인유학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u>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u></p>	<p><u>충청북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u>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u>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u>----- ----- ----- ---- <u>유치</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외국인 유학생</u>”이란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p> <p>가. 「<u>고등교육법 시행령</u>」 제29조제2항제6호의 <u>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 목의 외국인</u></p> <p>나. 「<u>고등교육법 시행령</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외국인 유학생</u>”이란 「<u>출입국관리법</u>」 제19조의4에 따라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규학위를 받기 위하여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p>

원 안	수 정 안
<p><u>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u></p> <p>2. <u>“어학연수생”이란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해 도내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을 말한다.</u></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하 “외국인 유학생등”이라 한다)</u>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u>외국인 유학생등</u>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p> <p><신 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 ----- <u>외국인유학생</u>----- ----- ----- ----- ----- -----.</p> <p>제4조(지원 대상) ① ---- <u>외국인 유학생</u>----- ----. ----- ----- ----- ----- ----.</p> <p>② <u>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자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u></p>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u>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u>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외국인 유학생등</u> 지원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u>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시책</u>에 관한 사항 3. <u>외국인 유학생등</u>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u>외국인 유학생등</u>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5. <u>외국인 유학생등의</u>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u>외국인 유학생등</u>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u>성별, 나이, 국적</u>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 ----- <u>외국인유학생</u> ----- ----- ----- ----- ----- ----- -----</p> <p>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외국인유학생</u> ----- ----- 2. <u>외국인유학생 지원 시책, 지원 기준, 자격, 기간 및 절차</u> 등에 관한 사항 3. <u>외국인유학생</u> ----- ----- 4. <u>외국인유학생</u> ----- ----- 5. <u>외국인유학생</u>----- ----- -- 6. ----- <u>외국인유학생</u> ----- ----- ----- <p>③ ----- ----- <u>경우</u> ----- -----.</p>

원 안	수 정 안
<p>④ (생 략)</p> <p>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u>외국인 유학생</u>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u>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u></p> <p>2. <u>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u></p> <p>3. <u>생활·법률 상담</u></p> <p><신 설></p> <p>4. (생 략)</p> <p>5. <u>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u></p> <p>6. <u>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역사·문화 교육 및 행사</u></p> <p>7. <u>외국인 유학생</u>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p> <p>8. <u>안전, 인권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u></p> <p>9. 그 밖에 도지사가 <u>외국인 유학생</u>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 사업) ① ----- <u>외국인유학생</u>-----</p> <p>-----</p> <p>-----.</p> <p>1. ----- <u>적응에 필요한</u> -----</p> <p>-----</p> <p>2. <u>우수 외국인유학생</u> -----</p> <p><삭 제></p> <p>4. <u>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u></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5. <u>외국인유학생</u>-----</p> <p>--</p> <p><삭 제></p> <p>6. -----</p> <p>-- <u>외국인유학생</u>---</p> <p>② -----</p> <p>-----</p>

원 안	수 정 안
<p>대학,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 서 <u>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u> 지원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 업을 지원받은 <u>자 또는 수탁자</u> 가 <u>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u> 등으 로 사업경비를 지원을 받은 경 우 그 사업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p> <p>제7조(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 의 우수한 <u>외국인 유학생</u>들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유학생</u> 컨설팅 및 박람회 해 외 현지 개최 3. (생략) <p>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u>외국인 유학생</u>들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내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 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를 구축하여야 한다.</p>	<p>----- -- <u>경비</u>----- -----.</p> <p>③ ----- ----- <u>사람 또는</u> ----- -- <u>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u> <u>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거</u> <u>짓</u> ----- -----.</p> <p>제7조(유치 확대) ----- ----- <u>외국인유학생</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유학</u> ----- ----- 3. (현행과 같음) <p>제9조(협력체계 구축) ----- <u>외국인유학생</u>----- ----- ----- -----.</p>

충청북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규학위를 받기 위하여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자격,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유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유학생 지원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유학생 지원 시책, 지원 기준, 자격,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유학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유학생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5. 외국인유학생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유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성별, 나이, 국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다음해 지원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우수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원
 3. 취업·창업 연계 및 상담
 4.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
 5.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대학,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수탁자가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행위 방법으로 사업경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사업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도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계 기관, 법인·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0. 11. 28., 2001. 1. 29., 2001. 12. 31., 2002. 5. 27., 2005. 3. 25., 2006. 1. 13., 2007. 1. 24., 2008. 2. 14., 2008. 6. 5., 2008. 9. 18., 2009. 10. 7., 2010. 6. 29., 2010. 9. 1., 2011. 10. 17., 2013. 3. 23., 2014. 2. 11., 2014. 4. 29., 2015. 11. 30., 2016. 8. 29., 2016. 10. 25., 2017. 1. 17., 2018. 10. 16., 2022. 2. 28., 2023. 4. 18., 2024. 2. 20.>

1. ~ 5. (생략)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8. ~ 16. (생략)

③ ~ ⑦ (생략)

□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0., 2014. 3. 18., 2018. 3. 20., 2020. 6. 9., 2021. 8. 17.>

1.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전문개정 2018. 3. 20.]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5. 14.]